충남기후정보브리핑

8호

# ChungNam Climate Information Briefing

2015. 11. 24.

# 충남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용방안

표정기, 이상신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

- ◇ 2015년 본격 시행중인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지역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 산림탄소상쇄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근거(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)가 마련됨에 따라.
- ◇ 道 내포신도시내 행복나눔의 숲에 대한 산림탄소상쇄 사업등록과 이를 통해 지속적인 상쇄사업 등록에 대한 검토 필요

## □ 상쇄제도 현황

- O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BAU대비 37%로 이중 11.3%는 국제 시장(배출권, 상쇄등)을 이용하는 것으로 발표함.
- O 11.3%의 규모는 약 1.027만톤(tCO<sub>2</sub> eq)으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(IMM)의 활용 및 국내 법·제도 개선을 통해 잠재량 확보를 계획함.
- 상쇄(offset) :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 한 수단의 하나로서,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인증 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, 할당대상업체는 보 유 또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감축의무 이행에 활용가능한 제도 (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, 2015)
-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(IMM: Int'l Market Mechanism) : 신기후체계 (Post-2020)의 주요 감축수단 중 하나이며,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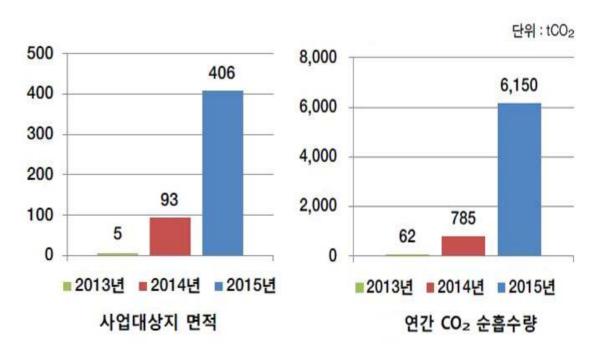


○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도내 상쇄제도는 34개 사업이 운영 중이며, 이중 산림탄소상쇄 사업은 높은 완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됨.

#### □ 산림탄소상쇄 제도 현황

- O 대표적인 국내 상쇄사업인 산림탄소상쇄는 '13년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어, 현재('15. 11.)까지 53건이 등록되었고 '15년 말까지 73건 등록 예정됨.
  - ※ 등록의 대부분은 강원, 경기에 분포하고 충남의 등록 사례는 없음.
-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전체 대상지는 약 504ha이고 사업기간중 예상되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은 115,624 tCO₂이고 연간 순흡수량은 6,997 tCO₂임.
  - ※ 2015년 6,150tCO₂은 충청남도 농업부분 감축목표량(50,121tCO₂)의 12.2%에 해당함 (충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서, 2010).

〈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연도별 면적 및 이산화탄소 순흡수량〉



(출처: 2015년 산림탄소상쇄 국제심포지엄)

#### □ 충남 탄소상쇄의 필요성

- 산림탄소상쇄 사업은 배출권거래 시장과 연동이 가능하여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친환경 이미지 효과로 지자체 및 기업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냄에 따라,
- 충남지역내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 및 정책적 활용을 위하여 내포신도시내 『행복나눔의 숲』의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추진이 필요함.

### □ 충남 산림탄소상쇄 등록

- 충남 내포신도시에 조성된 『행복나눔의 숲』은 충청남도의 주요 시설인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, 충청남도교육청이 인접하고 내포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변도로, 생활권과 접근성이 우수함.
- 숲조성 면적은 3.2ha(32,868㎡)이고 205,002본(교목 2,112본; 관목 17,630본; 초화류 185,260본)이 식재됨.
-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중, 비거래형 식생복구사업을 적용하여 사업기간 10년('14. 11~'24. 11)동안 흡수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은 277 tCO₂으로 연간 약 28 tCO₂의 이산화탄소 순흡수가 가능함.

### □ 향후 조치 및 대비 사항

-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통한 도 기후변화 대응잠재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등록 가능 대상지 발굴과 충남형 표준 사업등록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.
- 도내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검증기관 지정이 필요함.
- O 도내 기업의 CSR(기업의 사회적 책임)과 연계한 사업참여 및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.
- O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활용방안 수립 및 연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.

